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839호 2024. 5. 7.(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3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15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19호선) 공사완료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37호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4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4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9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 7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4 - 9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인천 검단지구 AA2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주)대우건설(대표 백정완)[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경화건설(주)(대표 박창완)[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20번길 86-53],  
 동부건설(주)(대표 윤진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주)청명종합건설(대표 진도용)[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신송로 312 2층],  
 (주)장형기업(대표 홍제태, 이수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3]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 AA28블록
  - 나. 대지면적: 54,945㎡
  - 다. 사업규모: 연면적 167,070.6771㎡
  - 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9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514,298,627천원
4. 사업기간: 2024. 6. 28. ~ 2026. 12.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끝.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9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6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5. 7. 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5-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303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6 (백석동)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301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2 (백석동)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77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0 (백석동)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7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52-6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651 (백석동)	20230821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에덴동산 조정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198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42 (경서동)	20090922	도로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	
7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숲로51번길 5 (백석동)	20210913	녹색숲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51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침출수 재이용시설
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5-10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235번길 26 (심곡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4-5-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02 (검암동)	건물 신축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창대철물건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915호

##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예 따라 기금 명칭 변경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4년 5월 7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2023.5.4.)	
2	인천광역시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2023.5.4.)	

##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폐기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지역화폐활성화기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2023.5.4.)	
2	인천광역시서구지역화폐활성화기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2023.5.4.)	

#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출납원인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변경	202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관인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변경	2024년 5월 7일	

# ☐ 폐기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지역화폐활성화 기금출납원인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변경	202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지역화폐활성화 기금운영관인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변경	202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24-92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19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48(2024. 2. 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1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45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19) 설치공사(가감속차로)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2	919	15 (15~18)	3	353	308	45	-	112.5	가감속차로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채현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5. 사업기간: 2024. 3. 1. ~ 2024. 3. 3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937호

##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석남동 444-4번지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4-4번지

나. 구역면적 : 4,316.3m<sup>2</sup>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6. 03.

나. 준공 예정일 : 2028. 05.

※ 사업추진단계시 착수일 및 준공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4번지 가동 5,6라인 지하사무소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032-560-459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3층)

7.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 94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녹청자 박물관의 위탁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녹청자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 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5항)
- ‘의무’를 ‘준수사항’으로, ‘협약’을 ‘계약’으로 개정(안 제7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7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5,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녹청자 박물관의 위탁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녹청자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 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5항)
- ‘의무’를 ‘준수사항’으로, ‘협약’을 ‘계약’으로 개정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협의

##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 책임, 위탁사무의 범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수탁자의 의무)”를“(수탁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며,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5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 책임, 위탁사무의 범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③·④ (생략)

⑤ 그 밖에 위·수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 7.8.)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  
-----  
-----  
----- 계약-----  
-----.

②·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4-943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5. 07.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4. 05. 07. ~ 2024. 05. 22.(16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375거3173 등 9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  
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375거3173	CHEVROLET TRAVERSE AWD	서**	2024.04.01.
2	164더2498	Rolls-Royce Ghost EWB	케**	2024.04.04.
3	15오5791	그랜저(GRANDEUR)	하**	2024.04.15.
4	86도8433	포터 II (PORTER II)	하**	2024.04.15.
5	250라7718	718 박스터 GTS 4.0	하**	2024.04.18.
6	69도0520	GLE350 d 4Matic	박**	2024.04.18.
7	60버9075	타이칸	케**	2024.04.23.
8	77나6643	뉴-카운티 어린이운송차	서**	2024.04.26.
9	228조1881	캐스퍼(CASPER)	변**	2024.04.3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94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표지판의 설치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전화 560-4055, 팩스 560-2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시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표지판의 설치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마.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에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947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관리 의무 명시(안 제5조)
-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 적립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예치 현황 심의위원회 보고 등(안 제7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전화 560-4054, 팩스 560-2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설치하여” 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 적립에 관한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제2항 중 “실(국)장이” 를 “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국·소장” 을 “국·소장”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u>설치하여</u>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                      -----                      - <u>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u></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u>&lt;신 설&gt;</u>                      5.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 적립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u>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④ <u>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u>                      1. <u>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u>                      2. <u>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u>                      3. <u>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u></p>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실·국·소장

2.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장 -----  
-----.

③ -----  
-----  
-----.

1. -----  
----- 국·소장

2. (현행과 같음)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 - 951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안(개정)이유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2년도 4분기 수용과제 이행점검 협조 요청」 관련 우리구 개선내용을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융자금 대출신청기한 연장 및 연장근거 마련 (안 제9조제2항)
- 나.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 확대를 위하여 대출한도액과 융자기간 변경 (안 제10조제2항, 안 제10조제6항)
- 다. 융자금 상환유예 근거규정 마련 (안 제12조제1항)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업지원과, 전화 032)560-4444, 팩스 560-2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업지원과 기업활성화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22년도 4분기 수용과제 이행점검 협조 요청」 관련 우리구 개선내용을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융자금 대출신청기한 연장 및 연장근거 마련 (안 제9조제2항)
- 나.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 확대를 위하여 대출한도액과 융자기간 변경 (안 제10조제2항, 안 제10조제6항)
- 다. 융자금 상환유예 근거규정 마련 (안 제12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용자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4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용자금은 용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업무”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	------	------	--------

\* 위 칸은 작성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신청서											
업명						대	(한 글)				
법인등록번호						표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 . )					자	(연 락 처)				
본 사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 장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장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면적	대지	m <sup>2</sup> ,	건물	m <sup>2</sup>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회사홈페이지 (E-mail)					연락책임자 (휴대폰)						
기업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총매출액			수출액			부채비율 (%)				
수혜이력	신규(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기간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2년(만기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3년(1년거치 2년간 4회 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3년(균등분할상환)		
우대기업 (해당사항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서구이전기업	서구기업인상 주민상	서구경제 단체가입	고용기업 (신청년도)	청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ESG경영 우수기업	
						고용인원 ( )인					
대출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		대출금리		%		
대출상당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 기타인 경우) 은행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상당확인	(담보제공방법이 보증서인 경우) 보증기금(재단)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증명하고,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 3.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증빙서류(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생략)</p> <p>&lt;신설&gt;</p>	<p>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용자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10조(용자조건) ① (생략)</p> <p>②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매년 정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용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p> <p>⑦ (생략)</p>	<p>제10조(용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5억원 -----</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5년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은 용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은 용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  
 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기업지원일자리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생략)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  
 -----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무 담당 과장----- 중소  
기업 육성기금업무 -----  
 --.

② (현행과 같음)

#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 - 952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안(개정)이유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2년도 4분기 수용과제 이행점검 협조 요청」 관련 우리구 개선내용을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융자금 대출신청기한 연장 및 연장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업지원과, 전화 032)560-4444, 팩스 560-2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업지원과 기업활성화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2년도 4분기 수용과제 이행점검 협조 요청」 관련 우리구 개선내용을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융자금 대출신청기한 연장 및 연장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시행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출조건(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소재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은행		
	대출신청기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하

첨부 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선 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1.·2.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대출조건(대출금액, 대출기간 등)</u></p> <p>② ----- ----- -----.</p> <p>1. <u>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u></p> <p>2. <u>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료</u></p> <p>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 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4-95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 다자녀가정 가구원, 65세 이상 노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안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 나. 현행 규정상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4조, 안 제6조제2항제4호, 별표1)

### 3. 의견제출

- . 제출기일 : 2024년 5월 27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744, FAX (032)560-2720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 다자녀가정 가구원, 65세 이상 노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안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 나. 현행 규정상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4조, 안 제6조제2항제4호, 별표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별첨

##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징수시간”을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정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7.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청사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8.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퍼센트 감면
9.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0퍼센트 감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 관련)**

구분	요금징수 시간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		
구 분 청	09:00 ~ 19:00	X	24시간	
검단출장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검단동
				블로대곡동
				원당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검암경서동				
마전동				
아라동	임시청사 사용			

\* 요금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은 각 청사 운영에 대한 관리사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  
 -----  
 -----  
 -----

5. (현행과 같음)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7.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8.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퍼센트 감면

9.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0퍼센트 감면

③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의2.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2.~23.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계 조례 발췌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3, 2006.12.1, 2016.7.8, 2020.6.29.)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개정 2006.12.1, 2014.9.29, 2016.7.8)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1.23, 2006.12.1, 2014.9.29)
  - 가. (삭제 2014.9.29)
  - 나. (삭제 2014.9.29)
  - 다. (삭제 2014.9.29)
4. 삭제 <2016.7.8>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4.9.29., 2022.12.19.)
6.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신설 2005. 1.17, 개정 2008.11.17, 2014.9.29, 2016.7.8)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신설 2006.12.1, 개정 2014.9.29, 2016.

7.8, 2017.3.29, 2018.10.2.)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개정 2022.12.19.)

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8.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신설 2006.12.1, 개정 2014.9.29)

9.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4.9.29)(개정 2022.12.19., 2023.8.28.)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신설 2014.9.29, 개정 2016.7.8, 2018.10.2.)

11.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11.13)

1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신설 2018.10.2.)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신설 2019.11.18.>

1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50퍼센트 감면(신설 2022.4.11.)

- ② 주차요금을 서구 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 ③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1.9.>]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24 - 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및 보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해 금연예방사업 공모전 등 진행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
-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질병관리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18-0522, 팩스 032-718-07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1. 제안이유

-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및 보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해 금연예방사업 공모전 등 진행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
-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별첨(「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서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중복응모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주 소	
⑤ 대상지역	⑥ 명 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연면적(m <sup>2</sup> )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찬성		반대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찬성		반대	
<p>「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날인)</span></p> <p><b>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b></p>				
신청시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li> <li>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li> <li>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li> </ol>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u></p> <p><u>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u></li> <li><u>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u></li> <li><u>4. 해당 공개공지등 도면에 관한 서류</u></li> </ol> <p><u>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u></p>

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서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

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  
출하는 중복응모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  
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관계법령 발췌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관계 자치법규 발취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 생략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6.>

11. 생략

②~④ 생략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